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479
----------	------

제안년월일 : 2023년 11월 24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인제 의원이 2023년 7월 19일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0)과 박성연 의원이 2023년 8월 2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8)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3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2023. 9. 6.)와 제321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2023. 11. 24.)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기존의 자율방범연합회만 지원하던 조례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까지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시장은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자치구별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방범단체에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자율방범단체”,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정의함(안 제2조).
- 자율방범단체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자율방범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부칙에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안 제2조).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단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자치구별로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단체 활동 지원

2.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 순찰 등 공익활동

3. 자치구간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치구별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지도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자율
방법연합회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한 것으로 본다.